

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855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발 의 자 : 이영실, 김화숙, 강동길,
김혜련, 최 선, 김경우,
이정인, 봉양순, 우형찬,
임종국, 권영희, 권순선,
김제리, 이병도, 이호대,
김정태, 채유미, 김소양,
김용연, 김동식, 오현정,
서윤기 의원 (22명)

1. 제안이유

「지역보건법」,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라 노인의 질병예방 및 지속관리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, 건강한 노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 건강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노인의 질병예방 및 지속관리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, 건강한 노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)
- 나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(안 제2조)
- 다.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
- 라. 노인건강증진 사업계획 수립 및 그 내용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마. 노인건강증진 사업 수행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바.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사. 업무 수행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역보건법」, 「노인복지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해당 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및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라 노인의 질병예방 및 지속관리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, 건강한 노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노인”이란 65세 이상의 시민을 말한다.
2. “건강증진”란 보건교육, 질병예방, 영양개선,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3. “관련 공무원 등”이란 시 또는 자치구 소속의 노인대상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을 의미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유지·증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·추진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노인 건강증진사업을 개발하고 동(洞) 단위 지역에 적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지역주민과 노인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건강한 마을을 조성하는데 적극 참여하고 그에 필요한 공공 인프라 확충 및 공적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노인이 건강을 유지·증진할 수 있도록 연구·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.

제4조(노인건강증진의 사업) ① 시장은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서울시 노인건강증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건강관리 등 노인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③ 노인 건강증진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 대상 건강행태 및 건강위험요인 평가
2. 제1호의 평가에 따른 개인별 노인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
3. 노년기의 특성을 반영한 신체적·심리적 지원
4. 노인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
5.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, 정보제공
6.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및 노인의 허약예방 관리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재정적 지원)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업무의 위탁 및 대행) ① 시장은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0조에 따라 노인 건강증진관련 업무를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7조(역량강화) ① 시장은 노인의 건강증진 업무 수행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 등의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관련 공무원 등의 교육을 위하여 자치구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